

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

◆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보험료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납부 유예 및 감면 등을 통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부담 완화 추진

<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내용>

		건강보험	국민연금	고용보험	산재보험
납부 유예	지원 대상	-	•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(소득감소 요건 충족)	• 30인미만 사업장	• 30인미만 사업장 + 1인 자영업자 + 특별고용 사업장
	지원 내용	-	• 3개월 납부 유예 (3~5월 부과분)	• 3개월 납부 유예 (3~5월 부과분)	• 3개월 납부 유예 (3~5월 부과분)
감면	지원 대상	• 보험료 하위 20~40%	-	-	• 30인미만 사업장 + 1인 자영업자 + 특별고용 사업장
	지원 내용	• 3개월 30% 감면 (3~5월 부과분)	-	-	• 6개월 30% 감면 (3~8월 부과분)

1 기업 지원

1 [고용보험] : 3개월 납부 유예

- (대 상) 30인 미만 사업장
- (적용시기) 3~5월분 적용 (단, 5.10까지 신청 시 가능)

* 3월분 기 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

< 고용보험 납부 유예 월별 납부액 예시 >

대상	3월분	4월분	5월분	6월분	7월분	8월분
납기일	4.10→7.10	5.10→8.10	6.10→9.10	7.10	8.10	9.10
납부액	0원	0원	0원	200% (3월분 100% +6월분 100%)	200% (4월분 100% +7월분 100%)	200% (5월분 100% +8월분 100%)

* 유예분은 각각 3개월 후 납부

2 [산재보험] : ① 3개월 납부 유예 + ② 6개월 30% 감면

① 3개월 납부 유예

- (대 상) 30인 미만 사업장, 1인 자영업자, 특별고용* 사업장

* 보험설계사, 학습지 교사, 골프장 캐디, 방문판매원 등

- (적용시기) 3~5월분 적용 (단, 5.10까지 신청 시 가능)

* 3월분 기 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

② 6개월 30% 감면

- (대 상) 30인 미만 사업장, 1인 자영업자, 특별고용* 사업장

* 보험설계사, 학습지 교사, 골프장 캐디, 방문판매원 등

- (적용시기) 3~5월분 적용

< 산재보험 감면 및 납부 유예 시 월별 납부액 예시 >

대상	3월분	4월분	5월분	6월분	7월분	8월분
납부유예	4.10→7.10	5.10→8.10	6.10→9.10	7.10	8.10	9.10
감면비율	△30%	△30%	△30%	△30%	△30%	△30%
납부비율	0원	0원	0원	140% (3월분 70% +6월분 70%)	140% (4월분 70% +7월분 70%)	140% (5월분 70% +8월분 70%)

* 유예분은 각각 3개월 후 납부

2

근로자 지원

1 [건강보험] : 3개월 30% 감면

- (대 상) 보험료 하위 20~40%* 대상

* 보험료 하위 20%(특별재난지역(대구·경북)은 하위 50%) 기 감면 中(1차 추경 내용)
보험료 하위 40% 직장가입자 月소득 223만원

- (적용시기) 3~5월분까지 적용하되, 4월분에 합산·감면

< 건강보험 감면 시 월별 납부액 예시 >

대상(납기)	3월분(~4.10)	4월분(~5.10)	5월분(~6.10)
납부비율	100% (△0%)	40% (△30%(3월)+△30%(4월))	70% (△30%)

2 [국민연금] : 3개월 납부 유예

- (대 상) 요건*을 충족하는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

* 실직·휴직(소득상실), 소득감소 등

- (적용시기) 3~5월분*까지 적용 (단, 4.15**까지 신청 시 가능)

* 3월분 기 납부한 경우, 5월에 환급 예정(연체금 등 있는 경우 공제 후 환급)

** 5.15일까지 신청 시 4~6월분 유예 가능

<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시 월별 납부액 예시 >

대상	3월분	4월분	5월분	6월분	7월분	8월분
납부액	0원	0원	0원	100%	100%	100%

* 납부재개 시 유예금액에 대한 추가납부 가능 (60개월까지 분납)